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0호

2019. 5. 16.(목)



제718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7183호 서울특별시 특경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8
제7184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제718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7186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71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7188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제7189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제719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7191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7192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71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719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71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7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제71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71
제71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제7199호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720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7201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720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72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
제7204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2
제720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72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7207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일부예고]

제2019-13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법예고	188
제2019-1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법예고	189
제2019-14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법예고	189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할 필요 있음
-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7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의 기밀”을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가.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방식 공사시 감리제도, 즉 건설사업관리와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수도계량기 보존제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들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 동파가 최소화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공사시 감리제도, 즉 건설사업관리와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나. 수도계량기 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함(제42조)